202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 자전거에 청색티켓이 적용됩니다.

# 면허가 없어도 드라이버

## 교통법규를 지키며 책임있는 운전을!




## ~청색티켓 (교통위반통보제도) 도입 후 지도·단속에 관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도 경고」가 이루어지며, 악질·위험한 위반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도도부현경찰

交通ルールを守って
つながる笑顔

# 자전거 지도 및 단속의 기본적인 실행방식



자전거 교통위반을 인지한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경고」를 실시합니다.** 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보행자 또는 타 차량에게 위험・민폐 가 되는 **「악질・위험한 위반」의 경우,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도·단속의 기본적인 실행방식은 청색티켓 도입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 교통위반통보제도란?




「위반행위 ※1」를 한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단속을 받으면, 청색티켓(위반 행위가 되는 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서면)이 교부되어, 정액의 범칙금 납부가 통보됩니다. 통보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되지 않는(소위 '전과'도 남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중 신호 위반이나 지정 장소에서 일시 정지 위반 등, 경찰관이 실제로 보고 명백히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해진 것

### 교통위반통보제도

위반행위



↓

청색티켓

↓

범칙금 납부

↓

종결

### 형사절차

중대한 위반※2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중대한 위반(비일반위반행위): 음주운전, 방해운전, 휴대전화 사용 등(교통 위험), 뺑소니 등



↓

적색티켓 등

↓

범칙금 미납부

↓

형사수속

↓

출두 및 취조, 재판, 벌금 납부 등

### 위반 행위와 범칙금의 예시

**12,000 엔**

- 휴대전화 사용 등(손에 들고 있는 경우)

**7,000 엔**

- 건널목 차단기 무시

**6,000 엔**

- 신호 무시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통행 구분 위반(역주행, 보도 통행 등)
- 횡단보도 통행자 방해 등

**5,000 엔**

- 지정장소 일시정지 위반 등
- 라이트 미점등
- 자전거 제동장치 불량

**3,000 엔**

- 병진(나란히 주행) 금지 위반
- 경차량 승차적재 제한 위반 (2인 탑승 등)

## 자전거 운전자 강습이란?

자전거 운전과 관련하여, 도로에서 교통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위반 행위(위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게, 공안위원회가 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험행위 신호 위반, 지정장소 일시정지 위반 등, 휴대전화 사용 등, 통행 구분 위반 등